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

2023. 3.



CONTENTS



I 개요

1. 목적	03
2. 적용범위	03
3. 운영원칙	03

II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 영업자·소비자 출입 관련 준수사항	04
2. 위생관리	05
3. 안전사고 예방·관리	05
4. 가축전염병관리	06
5. 기타 준수사항	06
6. 사후관리	07
7. 부처별 업무담당자 현황	07

붙임

1. 반려동물 기록관리(예)	07
2. 식품접객업소 점검표	08

※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 실증특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식품접객업소 출입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23.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01 목적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규제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함

02 적용 범위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규제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한함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를 의미

03 운영 원칙

공통

규제 실증특례 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토록 함

공통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조건

① 반려동물 출입 여부에 대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위한 조치^{*}, ②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③ 관련 법 및 기타 타법(사료관리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II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01 영업자·소비자 출입 관련 준수사항

영업자 출입관리

-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
-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
- ☑ 광견병 등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음
- ☑ 맹견은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출입 불가
※ [맹견의 범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 반려동물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 비치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표시(예)



소비자 준수사항

- ☑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 ☑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매너벨트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전용 쓰레기통에 즉시 폐기
- ☑ 화장실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씻기는 행위 금지
- ☑ 소비자는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에 반려동물 음식물 제공 금지

- ☑ 반려동물 전용 공간(의자, 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대형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고정
- 목줄의 길이는 타 동물과 접촉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길이
- ☑ 소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 출입구에 비치된 소독제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출입

02 위생관리



- ☑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 ☑ 반려동물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용 조리대, 식기, 기구 등을 사람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사용
- ☑ 반려동물의 배설물, 매너벨트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폐기할 수 있도록 일회용 위생장갑, 전용 쓰레기통, 봉투 등 구비
- ☑ 음식접 등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비접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접촉 시 접촉 전후에 손을 세척·소독하거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
- ☑ 주기적으로(2시간에 1회)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
- ☑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03 안전사고 예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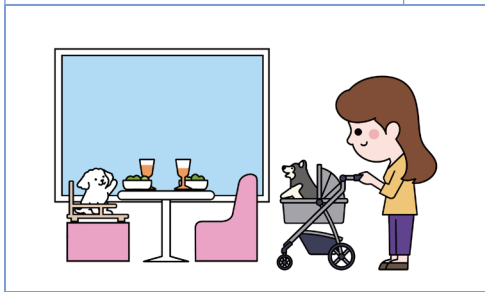
- ☑ 위협적이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04 가축전염병 예방

-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내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관리
 - 반려동물용 전용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고 타 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을 설치

음식점 내에서 이동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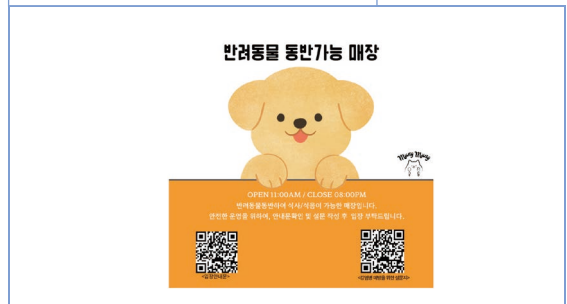


- ☑ 반려동물 출입 시 온라인설문조사 툴* 등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
 - ※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 사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기록가능

반려동물 목줄걸이



구글폼 활용 화면



- ☑ 반려동물이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 비치

05 기타 준수사항

- ☑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
- ☑ 사업자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제기 시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사업자는 [불임2] 점검표에 따라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시범사업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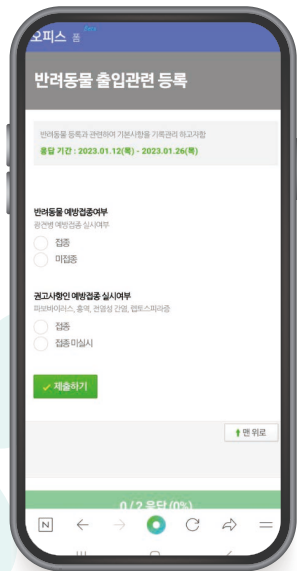
06 사후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 그 사실을 산자부에 통보
- ☑ 기타 실증 특례 허가사항 외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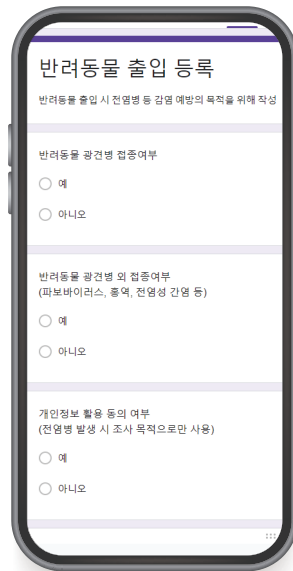
07 부처별 업무담당자 현황

구분	부서명	연락처
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4
실증특례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붙임 1 반려동물 기록관리(예)



▲ 예) 네이버



▲ 예) 다음



붙임 2

식품접객업소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출입관리	· 영업자 출입관리 사항 준수여부	적	부	
고지여부	· 소비자에게 영업장 내 준수사항 안내 여부			
위생관리 (조리장)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출입 금지 조치			
	· 조리대, 식기, 기구 등 구분 사용 여부			
위생관리 (영업장)	· 환기 준수 여부			
	·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			
	· 반려동물용 식기 등 구분·관리 여부			
	· 위생장갑·매너벨트·전용 쓰레기통 구비 여부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 금지 여부(해당 시)			
가축 전염병 관리	· 반려동물 이동 금지 준수 여부			
	· 반려동물 전용식탁, 의자, 목줄걸이 구비 여부			
	· 반려동물 접종, 출입 기록관리 운영 여부			
	· 출입구 입구 소독제 등 구비 여부			

※ 점검표는 각 업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확인자(제조업) 업체명 직책 성명 (인)

점검자(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

